

정 관

KET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ENGINEERED KOREA ELECTRIC TERMINAL CO., LTD.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라고 말한다.

영문으로는 KOREA ELECTRIC TERMINAL CO.,LTD.(약호 KET)라 표기 한다. <개정 2012.3.23>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 및 전기산업용 코넥타, 정밀압착단자 설계 및 제조판매업
2. 전자 및 전기산업용 정밀철물부품의 설계 및 제조판매업
3. 수지가공판매업.
4. 차량용 정밀부품 제조판매업
5. 각호에 관련된 제품 제조용 금형 및 치구, 공구, 기계설계 및 제조판매업
6. 각호의 각 사업과 부대되는 수출입업
7. 각호에 관련된 제품의 표면처리 제조판매업
8.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
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0.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11.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제조업
12.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13. 각종 상품구입 및 도소매업
14. 광섬유 및 광요소 제조업
15.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16. 부동산 및 임대업
1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인천광역시 내에 둔다. <개정 2012.3.23>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공장, 지점, 영업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e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1.3.18>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 원으로 한다.

제 7 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개정 2019.3.22>

제 9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2. 矢崎總業株式會社(본점소재지: 日本國 東京都 港區 3 田 1 丁目 4 番地 28 號)에게 110,000 주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2.3.23>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3>

④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2.3.23>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개정 2019.3.22>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삭제 2019.3.22>

제 12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권리 행사할 날에 앞선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제 3 장 채 권

제 13 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신설 2019.3.22>

제 15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0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3.22>

제 4 장 주주총회

제 16 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 12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3.22>

제 17 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2>

제 21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소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2012.3.23>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제 22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3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 24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1(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의 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②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3>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3>

제 26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27 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3.22>

②이 회사의 감사는 1 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 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③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 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2>

제 28 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이 회사는 상법 제 382 조의 2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②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제 30 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7 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 명과,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상무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제 32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23>

제 32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3.23>

제 34 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④제 3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⑤감사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제 35 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③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 2 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2>

제 37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 2012.3.23>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3.2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8 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9 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 40 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 41 조(사업년도)

이 회사는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42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2.3.23>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신설 2012.3.23>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3>

⑥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제 42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제 43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잉여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4 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5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46 조(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신설 2012.3.23>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7 장 부 칙

(시 행 일) 이 정관은 제 46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4 조의 2 및 제 15 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3.22>

서기 1973년 04월 18일 제정	서기 1998년 03월 26일 개정
서기 1975년 01월 28일 개정	서기 1999년 03월 19일 개정
서기 1982년 08월 16일 개정	서기 2001년 03월 16일 개정
서기 1984년 12월 28일 개정	서기 2002년 03월 15일 개정
서기 1987년 06월 10일 개정	서기 2003년 03월 14일 개정
서기 1987년 06월 24일 개정	서기 2004년 03월 19일 개정
서기 1989년 11월 17일 개정	서기 2006년 03월 17일 개정
서기 1993년 01월 28일 개정	서기 2009년 03월 20일 개정
서기 1994년 02월 22일 개정	서기 2011년 03월 18일 개정
서기 1995년 03월 29일 개정	서기 2012년 03월 23일 개정
서기 1996년 03월 28일 개정	서기 2019년 03월 22일 개정
서기 1997년 03월 14일 개정	

2019년 03월 22일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8

대표이사 이창원